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3.~2019.5.4. 기간 중 본인 스스로 또는 乙 등 28명과 공모하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후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9.10.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6.7.3. 丙으로부터 차량을 인계받고, 고의로 차량을 개천으로 진행시켜 빠트렸으나, 마치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후 우연히 수로에 빠진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6.1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9.9.1. 丁, 戊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운기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운기가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9.1.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44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는 등 총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7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